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관련 기초자료 제공〉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9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세 관련 기초자료 제공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24.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세 관련 기초자료 제공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의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⑩ 제7항 및 제9항----- ----- 제외한다) 및 기초자료-----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 -----. ⑪ -----제10항-----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10. (생략)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회의원 등이 조세정책의 연구 및 평가 등을 위해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²⁾. 이는 국세통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세관련 학술 및 정책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회 등이 지방세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지방세 통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지방세통계센터 설치의 근거규정은 2026년도 1월 29일에 마련³⁾되어 2027년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Information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Strategy Planning: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2028년 시스템 구축 시작, 2029년 지방세통계정보센터 완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므로, 기초자료에 제공에 대한 근거규정 설치는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등 기초자료의 비식별화 및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기초자료의 비식별화 및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단계에 따라 시스템 완성 전이라도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속히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국세통계센터의 경우에는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가 설치된 이후 2019년 12월에 국세통계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통계작성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나,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
